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변 호	3042
------------	------

2025. 9. 1.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1.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회부일자: 2025. 8. 14.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9. 1.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1. 제안이유

-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시설의 이용 및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5조)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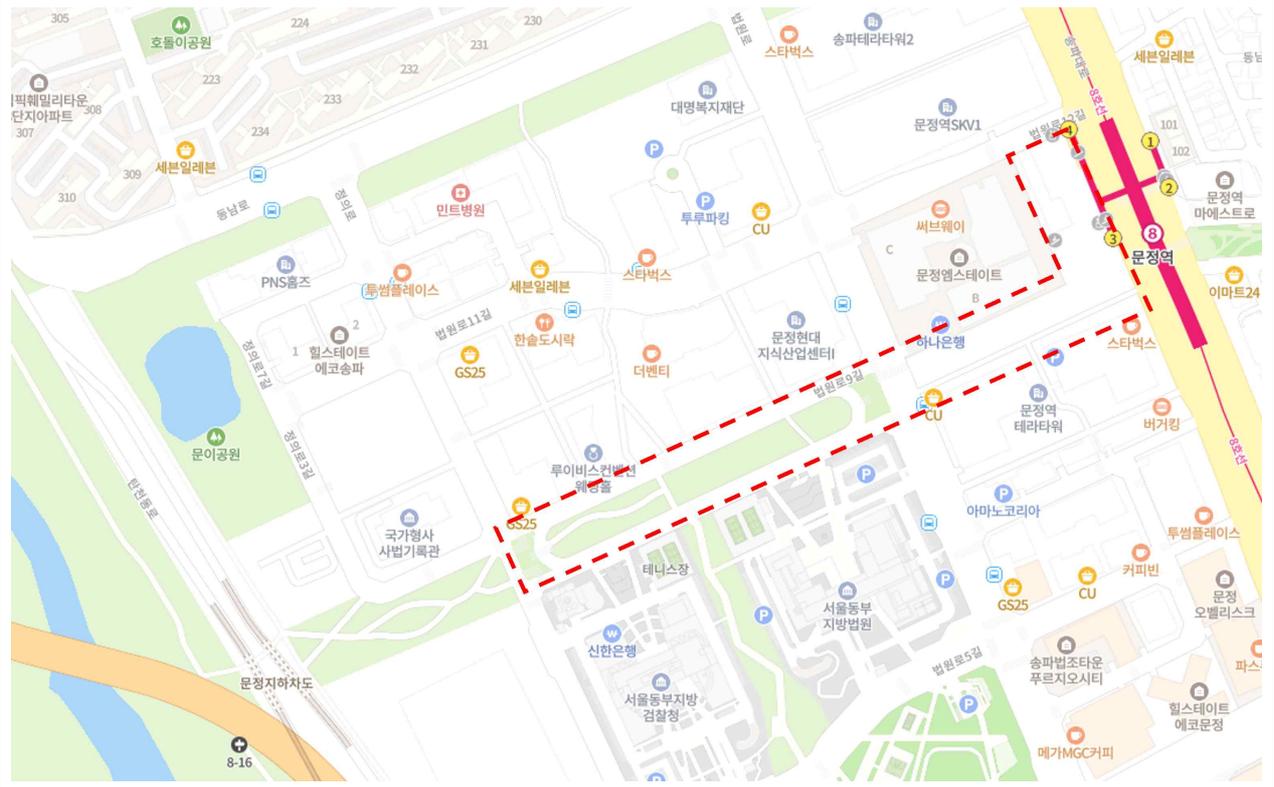
-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조성되어 유휴공간으로 존치되어온 문정역 광장(문정컬처밸리)을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으로 조성하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광장조성 개요

- ‘문정컬처밸리’는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송파구 문정동 222-5 일대)(검토보고서 붙임 2 참고)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총 조성면적은 18,772㎡이며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연계 조성되었음.

<문정역 광장>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22-5번지 일월
- 면 적 : 18,772㎡
- 시설현황 : 도시계획시설 광장(일부 도로 중복결정 1,718㎡)
(종합안내소, 휴게실, 주차장(30대), 화장실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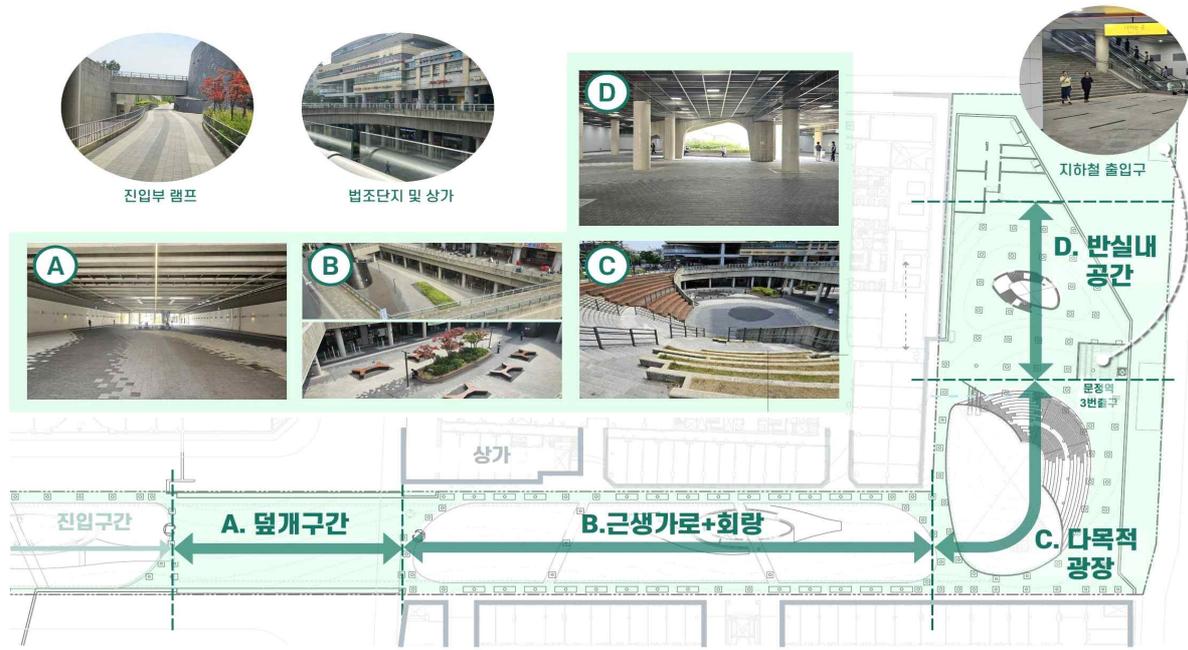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공구	2공구		
-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18,772.3	-	-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중로 2-5호선 중복결정 (면적:1,718㎡) 3공구 (미준공)

<문정역 광장 조성현황>



- 이 광장은 지난 2007년 6월 구역지정 후 현재까지 조성공사를 시행¹⁾ (사업시행자 : SH공사) 중인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8일 준공되었으며, 이후 개폐식 지붕구조물 설치 및 시민청 조성방안 등이 검토되어왔으나, 최근까지 뚜렷한 공간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었음.

- 지난 2023년 1월 4일 서울시장의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같은 해 6월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

1) 문정컬처벨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공공지원시설 외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부분 준공된 상태임.

고, 이후 2024년 9월 문정컬처벨리를 생활체육시설과 스포츠 체험 공간, 도시정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스포츠가든 문정역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현재 SH공사에서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조성을 위해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2025.5.29., 송파구청) 및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조성공사비 약 27.7억원)에 있으며, 향후 공사준공 이후 서울시로 광장을 인계인수²⁾(SH공사→서울시)할 예정임.³⁾

(2)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총칙 3개조, ▲시설의 사용 등 9개조, ▲시설의 이용 3개조, ▲운영의 위탁 4개조로 총 19개조문으로 구성됨.

가. 광장의 명칭(제명 및 안 제2조)

- 먼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명칭에는 ‘스포츠 가든(Sports Garden)’

2) 문정역 유희공간 혁신프로젝트 시행 협약서(2023.10.31.)

3)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추진경위

- 2007. 06. 28.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 2009. 05. 28.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2017. 11. 18. 문정 컬처벨리 조성공사 완료
- 2023. 01. 04.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발표(서울시장)
- 2023. 06. 15. 문정역 유희공간 혁신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2023. 10. 31. 문정역 유희공간 혁신프로젝트 시행 협약 체결(관광체육국-SH공사)
(SH공사에서 모든 사업비 및 설계·공사비를 부담, 준공 후 문정컬처벨리 기부채납)
- 2024. 09. 05. 기본계획(안) 확정(당초 복합스포츠문화공간 → 스포츠가든)
(관리청 변경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 → 미래공간기획관(도시활력담당관))
- 2024. 11. 2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2025. 05. 29.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SH공사 → 송파구청)
- 2025. 07. 14. ‘문정스포츠가든 조성공사’(추정가격 : 약 27.7억원)를 공고
- 2025. 08. 14. 계약체결 및 착공(공사기간 2025.08.14. ~ 2026.04.21.)

이라는 영문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용어는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표현이기는 하나,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3조 및 제13조(검토보고서 붙임 1 참고)에 따라 공문서 등에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용어는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외국어 병기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미래공간기획관(도시활력담당관)은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⁴⁾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반영하고자 ‘핀 스테이션’ 및 ‘러너·핏·스마트무브 스테이션’, ‘런 베이스’와 같은 정책·사업명에 대한 시민 친화적 한글 명칭을 개발하고, 디자인 체계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위해 용역⁵⁾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정책사업 명칭의 한글전환이 필요해 보임.

나.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안 제4조 및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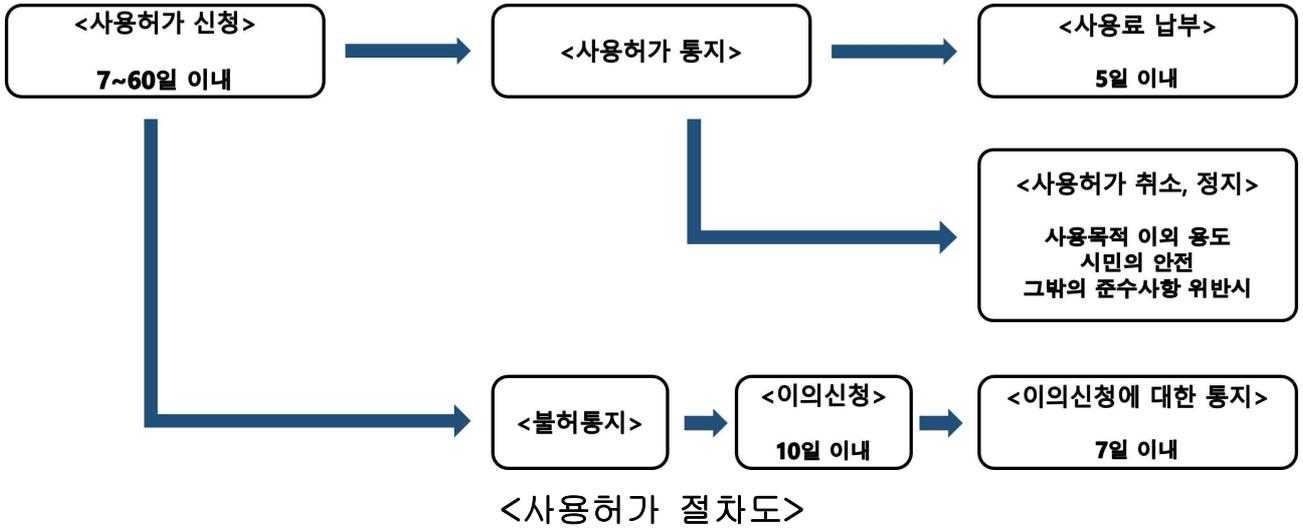
- 광장의 사용신청은 사용일의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일이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인 경우 우선하여

4)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핀-스테이션”, “러너스테이션” 등의 안내표기와 사업명에 대한 공공언어 개선을 권고한 점을 감안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2829(2025.7.14.), “서울시 정책명, 공공시설물 명칭 사용 관련 공공언어 개선 권고”

5) 도시활력담당관-6285(2025.7.30.), “핀 스테이션 공간브랜딩 안내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추진계획”

허가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 내 광장별 사용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익목적 또는 지자체 행사,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등 관련행사 등이 공통적이거나, '마곡광장'의 경우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나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광장별 우선사용순위 세부사항>

광장명	우선사용순위
세운광장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광화문광장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⁶⁾ '서울광장'은 열린광장이라는 조성취지를 반영하여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광장명	우선사용순위
서울광장	<p>「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마곡광장	<p>「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p>「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 이에,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도 조성취지를 감안한다면 체육관련 행사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광장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예시)
<p>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생략)</p> <p>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1. ~ 2.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예시)
<신 설> 3. (생 략)	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 산 4. (제정안과 같음)

다. 사용료 및 이용료(안 제10조 및 제13조)

○ 서울시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장소사용자와 프로그램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고,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각각에 대해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에 조성될 예정인 체육시설(다목적 코트, 배드민턴 코트, 탁구대, 피트니스, GX룸)에 대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 조항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른 광장(세운·광화문·서울·마곡)의 사용·관리 조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인데,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 요청시기에 따라 사용료 반환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장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⁷⁾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 반환
- 5일 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9
- 1일 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7
- 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 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서는 체육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1인 1회당 2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

7) 다만,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향후 광장 및 체육시설의 이용 추이를 살펴보고 사용료 반환비율의 증감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초생활수급자나 그 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 이용료를 20~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감면비율의 차등 적용 시 감면대상별 적정 감면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을 마련하는 등 사용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운영(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조성 후 광장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난 2025년 2월 수립한 “문정역 스포츠가든 광장 사업 추진계획”⁸⁾ 상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광장을 관리·운영할 계획임을 알 수 있는데, 민간위탁 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서울시가 직접 광장을 운영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마.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조성 후 오랜기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문정컬처밸리’를 다목적 운동공간과 도시정원으로 구성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으로 조성한 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8) 도시활력담당관-1243(2025.2.14.)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가든’이라는 외국어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말을 사용한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광장의 특성 및 조성배경 등을 감안하여 광장사용의 중복신청시 우선순위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광장의 운영은 민간위탁만이 아닌 직접 운영방식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광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조례로 광장의 사용 및 관리 근거를 두고 있는 광장은 현재 총 5개소로, 세운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마곡광장, 서울역광장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서울역광장을 제외하면 총 4개소가 서울시 소유의 광장임.
- 현재 서울시 소유광장의 관리·운영은 개별 실·본부·국⁹⁾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광장의 조성부서이거나, 개발부서, 재산관리관 등과 연계된 것이나, 시민의 이용편의, 공간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서울시 소유의 광장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향후에는 유휴공간의 발굴 및 개발 외에도 기존 광장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콘텐츠 개발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세운광장, 광화문광장 : 균형발전본부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 행정국
마곡광장 : 경제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광장 조성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청 시 사용일에 중복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를 추가함.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42
----------	------------

제안일자 : 2025. 9. 1.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광장 조성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청 시 사용일에 중복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사용일에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허가 사항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생략)</p> <p>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 -----.</p> <p>1. 2. (제정안과 같음)</p> <p><u>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u></p> <p>4. (제정안 제3호와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77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체육 및 조경시설, 주차장, 종합안내소, 화장실 등 해당 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2장 시설의 사용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 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 사용허가 통지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2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7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 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3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
항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
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같
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
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
·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65세 이상 어르신

제1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 시작일 전 이용자의 이용취소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7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5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사용허가신청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년 월 일(요일) 시 분 (시간 분)		
사용인원		사용면적	m ²
행사내용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명 (단체명)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년 월 일</p> <p>신청자 (서명 또는 인)</p> </div>			
서울특별시장 귀하			
<p>☞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p> <p>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p> <p>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p> <p>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p>			

[별표 1]

광장사용료 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m ² /시간	10 ~ 20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준

(제9조제4항 관련)

시 설	금 액 (시간당)	비 고
다목적 코트	10,000원 ~ 20,000원	
배드민턴 코트	5,000원 ~ 10,000원	
탁구대(1면)	5,000원 ~ 10,000원	
피트니스	20,000원 ~ 40,000원	
GX 룸	20,000원 ~ 40,000원	
기 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대여도 포함한다. 2. 위 사용료는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별표 3]

광장이용료 기준

(제13조 관련)

1.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 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 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20,000원 이하	재료비 포함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